

정 책 자 료

공정거래법 해설 소개

업무부제공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공정거래법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실의 답변 내용이다. 영업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편집자주—

1.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조정시 업체간 가격변경 시점이 어느 정도 상이하여야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및 제26조제1항제1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중 가격 공동행위는 2이상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이하 "가격결정"이라 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또한 2이상의 업체들이 명시적인 협정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시기, 가격변경을 등)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가격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공정거래법 제19조제3항)되는 바, 공동행위의 추정은 당해 품목의 시장구조, 수급상황, 가격결정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업체간 가격결정의 시점이 상이할지라도 사업자들이나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업체간 가격변경시점이 상이한 정도만에 의해

위법행위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격변경폭이 지역적으로 상이한 경우 위법여부와 이때의 지역적 구분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은 지역적 가격변경폭의 상이여부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특정지역(당해지역에서 경쟁이 성립되고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로서 예컨대 특정 시, 군, 구는 물론 전국 등을 불문함)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업체간에 경쟁을 제한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일정한 조건(외상기일 연장,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변경하는 행위의 위법여부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처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공동회)에 위반됩니다.

4. 하위 유통업체와의 공급계약서 각종 의무(배타적 공급, 선매권, 손해배상, 각종 서면보고 및 승인 등)를 부과하여 경영간섭을 하는 것이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하위 유통업체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한 사업자가 질의내용과 같은 각종 의무를 하위 유통업체에게 부과하고 그 부과가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큰 경우 고시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또한, 특정사업자가 하위 유통업체에 질의내용과 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여 하위 유통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고시 제7조(구속조건부 거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5. 경쟁업체간에 거래관행보다 낮은 가격 및 파격적인 거래조건(지원자금, 외상매입금 등)으로 거래처를 유인하는 행위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정사업자가 거래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①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②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③계속하여 공급한다는 세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고시 제3조(경쟁사업자 배제)에 위반될 수 있으며,

-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고시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단체가 그 공급선에 거래재고(채무불이행)를 요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불량업자(본 질의에서는 채무불이행업자)로 구별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